

## SB 998 주거용 유틸리티 차단 서비스 정책

## 배경

상원 법안(Senate Bill, SB) 998 은 지급 능력이 없어 수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특정 절차적 및 주의적 요건을 부과합니다. 수도 차단 보호법(Water Shutoff Protection Act)으로 알려진 SB 998 은 2018 년 9 월 28 일 주지사 Jerry Brown 에 의해 법안(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116900 조, 이하 참조)으로 통과되었습니다. SB 998 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동주택, 농가주택등의 주거용 서비스가 있는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정보는 Casitas 수도권 용수 지구(Casitas Municipal Water Distri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ustomerservice@casitaswater.com 또는 805-649-2251(내선 번호 0)번으로 Casitas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 정책에 따라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2020 년 1 월 8 일에 채택되어 2023 년 3 월 22 일 및 2023 년 5 월 10 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공익사업 서비스 중단 정책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영어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스페인어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중국어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한국어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타갈로그어
-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SB 998 정책 베트남어



## 수도 요금 정책: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서비스 중단

- 1. 목적: 이 정책은 "단수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998 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어 2018 년 9 월 28 일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116900 조, 이하 참조). 이 정책은 Casitas 수도권 용수 지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5-649-2251 번으로 (또는 이메일 customerservice@casitaswater.com 을 통해) Casitas 수도권 용수 지구(CMWD)에 연락해, 이 정책에 따라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유효일: 이 정책은 이사회에서 2020 년 1 월 8 일에 채택되어 2023 년 3 월 22 일 및 2023 년 5 월 10 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3. 게시된 언어: 이 정책 및 이 정책에 따른 서면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CMWD 서비스 지역 거주민의 최소 10%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4. SB 998 의 요건에 부합하는 수도 서비스 요금 및 규정 조항.

완전히 채택된 요금 및 규정 버전은 Casitas 수도권 용수 지구 웹사이트 www.casitaswate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섹션 2.2 Casitas 요금 및 규정에서 고객 분류 및 수도 사용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2.2.12 "주거용 서비스"란 음용, 취사, 목욕, 세탁 및 설거지, 변기 세정수, 개인 텃밭 또는 유실수 정원을 포함한 조경용 물 공급과 같은 용도로 단일 단위 거주지에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상수도 기관, 사업체 또는 산업 시설, 기타 시설 또는 농업 서비스를 통해 주거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주거용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2.2.8 "다세대 주거용 서비스"는 아파트 및 콘도 단지, 이동형 주택 단지, 농가 주택, 부속 주거용 유닛 또는 기타 유형의 커뮤니티 개발지를 포함하여 2 개이상의 법적 주거용 유닛이 있는 부지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2.9 "비거주용 서비스"란 여기에서 정의된 "주거용 서비스" 또는 "다가구 주거용 서비스"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B. 섹션 3 Casitas 요율 및 규정 중 정기 수도 서비스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7. 보증금 및 크레딧 수립. 모든 고객은 Casitas 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크레딧이 수립될 때까지 Casitas 에 대한 고객 채무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고객이 수도 서비스 기관인 경우 크레딧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활성 상태의 고객이 계정을 개설하는 경우 고객이 Casitas 가 만족할 만큼 양호한 크레딧을 확보해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최근 2 년 동안 연체 요금, 서비스 중단 통지 또는 중단 사례가 없었다면 고객의 크레딧이 Casitas 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 및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이 Casitas 가 만족할 만큼 크레딧을 확립하고 유지하면 고객의 예치금은 이자 없이 계좌로 입금되어 환불됩니다. 보증금은 최종 고지서에 적용되고 잔액이 \$1.00 미만인 경우 보증금 환불은 요청 시에만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은 채택된 요율 및 규정의 부록 B 에 있는 표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미터 크기	금액
최대 1 미터:	\$ 60.00
최대 2 인치 미터:	100.00
최대 2 인치 미터:	150.00
3 인치 이상 미터:	200.00



3.8 <u>미해결된 채무</u>. 새로운 소재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고객은 이전 소재지에서 제공받은 Casitas 수도 서비스와 관련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3.9 <u>임차인</u>. 모든 수도 요금은 부지 소유자의 책임이지만 이 용수 지구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할 때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청구서는 세입자 앞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부지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상의 고객이고, 해당 계정이 체납 중이며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섹션 19.3 <u>"연체"</u> 참조),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임차인 또는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고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후 해당 고객에게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거주자가 기록상의 체납 계정 고객이 주거지의 소유주, 관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과거에 그러했던 것을 증명한다면, 해당 거주자에게는 체납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검증 자료로는 임차 또는 임대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거주자가 해당 부지를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 또는 민법 섹션 1962 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이 있습니다. 부지 소유주,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보유한 기존의 기록상의 고객 계정에서 발생한 남은 연체금은 이 하위 섹션 19.5 "미납 시 구제책"에 기술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좌를 닫으면 해당 계좌는 소유주의 명의로 돌아오고 임차인이 계좌를 닫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와 요금은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섹션 4 서비스 종료, 중단 및 복구 규정에 따라 부지 소유자의 요청이 없으면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C. 섹션 19 Casitas 요율 및 규정 중 청구 및 납부 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2 납부일. 수도 요금 청구서에 따라 Casitas 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청구 방식에 따라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지정한 우편 주소로 또는 전자 청구서 형식으로 발송된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서가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날짜인 청구 날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19.3 <u>연체.</u> 수도 요금 청구서는 납부 기한이 있으며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이지나면 연체됩니다. 청구일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청구 비용을 납부하지않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Casitas 는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을때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 통지 및 연체 요금: 청구일 익월의 두 번째 영업일에서 마지막 영업일 마감까지 고객 청구서가 미납 상태일 경우 Casitas 는 고객에게 연체 통지를 발송합니다. 고객의 청구서 주소가 서비스 주소와 다른 경우, 연체통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거주자" 주소)로도 발송됩니다. 부록 B 기타 수수료 및 요금표에 규정된 대로, 연체된 청구서에 대해 연체비가 고객의 계좌에 부과됩니다.

<u>납부 계획:</u> Casitas 는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 합의된 납부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계정에 대해 한 번에 하나의 대체 납부 방식만 허용되며 고객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된 납부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서비스 중단 경고장은 서비스 중단 열흘(10 일) 전에 전달과함께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객의 청구서 주소가 서비스 주소와다른 경우, 서비스 중단 경고장은 "거주자"의 서비스 주소로도 발송됩니다.서비스 중단 경고장에는 주거용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포함되어야합니다. 납부는 서비스 중단 경고장에 명시된 날짜의 오후 4 시



30 분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편 소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계속해서 미납된 경우, 다음 날 행 태그가 발부되고 부록 B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요금(해지 수수료)표에 따라 사정 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수도 요금 미납 이외의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Casitas 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통지를 보내는 것이 Casitas 가 여기에 명시된 서비스 중단에 대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9.3.1 <u>주거용 서비스</u>. 부지 소유주가 기록상의 고객인 경우, 이 용수 구역은 서비스가 중단되고 임차인이 섹션 3.9 임차인에 따라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서면을 통해 주거지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용 서비스 고객이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섹션 116910 (a)(1-3)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12 개월에 한 번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주거용 서비스 고객이 납부 계획 합의서에 동의한 후 주거용 서비스 고객이 육십(60)일 이상 납부 합의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합의서에 따라 지불하지 않을 경우 Casitas 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asitas 는 주거용 서비스 주소 집 문에 차단 통지 태그를 부착한 후 닷새(5 일) 이내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행 태그가 발부되었을 때 청구서가 미납으로 남아 있으면 부록 B 기타 수수료 및 요금(단수 수수료)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Casitas 는 계정이 최소 60 일 동안 연체된 경우,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0 이하에 명시된 내용 및 이하 수정되는 내용에 따라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한 후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9.4 <u>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이후 수도 서비스 복구</u>. 미납으로 인해 차단된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려면 하위 섹션 19.3 연체 및 19.5 미납 시 구제 조항에 따라 연체된 수도 서비스 요금 외에 부록 B 기타 수수료 및 요금에 명시된 복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용 고객의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이백(200) 퍼센트 미만인 경우,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총 서비스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제 116914 조(a)(1)(수정될 수 있음)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부에 사용된 수표가 어떠한 이유든지 은행에서 반환되는 경우, 행 태그가 발부되고 행 태그 발부 후 영업일 기준 5 일 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앞서 말한 복구 비용은 하위 섹션 19.6: 반환된 체크에 명시되어 있는 반환된 미지급 수표 수수료와 별개로 고객 계정에 다시 추가됩니다.

현재 고객이 서비스 복구를 요청하든 새 고객이 요청하든 Casitas 에게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72 시간 전까지 서비스 복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19.5 <u>미납 시 구제책</u>. 총괄 관리자는 적격한 관할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수도법 섹션 72094 조 및 그 이하에 따라 체납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지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또한/또는 해당 조치가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섹션 116900 및 그 이하 또는 차후 수정된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Casitas 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9.6 <u>반환된 체크</u>. 어떤 이유로든 체크가 은행에서 반환된 경우, 부록 B 기타수수료 및 요금에 따른 수수료가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각 반환된 체크에 대한 기타 수수료 및 요금표 (반환된 체크 수수료) 또한, 체크 반환 수수료를 부과받은 고객은 12 번의 청구 주기에 대해서 또는 총괄 관리자가 결정한 시험 기간 동안 현금 또는 신용 카드 납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끝날 때까지 시험적 현금 또는 신용 카드 납부 조건이 적용된 고객은 수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7. <u>청구서 이의제기</u> 고객은 하위 섹션 21.5: 청구서 이의제기의 절차에 따라 Casitas 에 수도 요금 청구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섹션 21 Casitas 요율 및 규정 중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 Casitas 요율 및 규정 중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도, 주거지의 성인이 주거용 수도 서비스 청구서와 관련하여 Casitas 또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행정 또는 법적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Casitas 는 이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21.1 주거용 서비스 차단 이의 신청: 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116900 조 및 이하에 따라 요금 청구 또는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하는 주거용 서비스 이용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서면 이의 제기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심리 담당자는 해당 이의 제기 건의 성격을 검토하고 총괄 관리자 또는 그 지명인에게 고객에게 보고해야 할 최종 결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21.2 <u>서비스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u>: 서비스 유형 변경에 대한 요청이 거부된고객은 지정된 수자원 보존 관리자에게 이의 신청의 성격을 설명하는 서면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수자원 보존 관리자와 엔지니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최종 권고사항을 총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총괄 관리자의 결정은 서면으로고객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21.3 <u>할당량에 대한 이의 제기:</u> 배정된 할당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객은 최근 채택된 물 효율성 및 할당 프로그램(Water Efficiency and Allocation Program) 버전에 설명된 이의 제기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1.4 <u>과도한 수도 사용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u>: 고객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체적 요금 또는 WEAP 보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객은 하위 섹션 20.2: 청구서 구제 프로그램에 제시된 청구서 구제 프로그램(Bill Relief Program)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1.5 <u>청구서 이의 제기:</u> 고객이 고객에게 제시된 청구서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구서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의 제기된 청구서 요금에서 최소 서비스 요금과 물 사용량과 상관없는 기타 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후속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비용은 고객이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 오류 또는 계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이의 제기는 청구서 심리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오류 확인 시 해결됩니다.

21.5.1. <u>청구서 심리 담당자의 청구서 조정</u> 청구서 심리 담당자는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제기 대상 청구서에서 최대 \$500.00 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00.00 이상의 금액은 총괄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객과 청구서 심리 담당자 또는 총괄 관리자가 이의 제기 대상 청구서를 이유로 Casitas 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하위 섹션 21.6 이사회 이의제기에 따라 최종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21.6 <u>이사회 이의제기</u>: 이 법령의 어떤 내용도 불복 당사자가 총괄 관리자의 결정에 대해 Casitas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불만 당사자는 특정 불만 당사자의 이익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규칙, 위반, 벌칙 또는 기타 구제책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고객 또는 신청자이어야 하며 이 용수 지구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총괄 관리자의 결정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고객이 아닌 경우해당 당사자가 구제를 요청하고 승인이 될 경우 해당 당사자가 고객이 되는 경우에 불복 당사자가 됩니다.

불복 당사자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그러한 결정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해당 구역의 서기관과 함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시 이유, 결정 날짜 및 요청된 구제책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접수 후 삼십(30)일 이내에 총괄 관리자는 이사회 앞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심리를 열고 적어도 열흘(10일) 전에 심리 시간과 장소를 서면으로 불복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에서 불복 당사자는 해당 이의 제기 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해당 이의 제기 건에 대한 완전한 결정을 허용할 만한 충분한 관련 문서 및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복 당사자가 이 하위 섹션에 규정된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며, 이사회가 불복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의무는 없습니다. 총괄 담당자가 이사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는 심리가 열리기 전에 적절한 시간에 불복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심리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어떠한 이의 제기 건도 거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또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총괄 담당자가 이사회가 취한 조치를 열흘(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취해진 조치에 대한 통지는 서면 통지가 이의 제기 상의 주소로 요금 별납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보내졌을 때 제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른 형태의 검토가 목적입니다. 이 장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결정 심의와 관련하여 상충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